업무위탁협의서

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(이하 "회사"라 한다)와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("이하 "병원"이라 한다)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의 따라 직무스트레스 및 뇌·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설문 검사의 위탁을 협의한다.

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회사"가 "병원"에게 위탁한 직무스트레스 및 뇌·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설문 검사를 "병원"이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"회사"가 "병원"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"회사"와 "병원"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위탁기간)

-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위탁일로 부터 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전항의 계약기간은 "회사"와 "병원"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 3 조 (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)

- ① "회사"가 "병원"에게 의뢰하는 위탁운영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시행되는 직무스트레스 및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설문 검사 진행
 - 2. 상기 검사의 결과 제공(직원 및 회사).

제 4 조 (수탁자의 공개)

- ① "회사"는 개인정보의 위탁 자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제 2항, 동법시행령 제 2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위탁의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② "병원"은 "회사"가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.
- ③ "병원"은 본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"회사"의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



와 관련하여 "회사"와 "병원"이 체결한 건강검진위탁계약 별지 개인정보위탁 확약서를 준용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"회사"와 "병원"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12월08일





(회사)

상 호 :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

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

대표자:변정우

(병원)

상 호 :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

주 소 : 서울시 종로구 세문인로 29(평동)

이사장:이수 빈